

I. 목적

Ingredion Incorporated 는 혁신적인 고객 중심 기업으로,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재료를 제공한다는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우리는 공급업체들이 우리의 원칙과 비즈니스 관행을 반영하는 핵심 가치를 공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인간 존중의 경영**,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신바람나는 일터**, **과감한 혁신**, **주인의식**입니다.

당사는 당사와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원칙과 기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글로벌 공급업체 윤리 강령(“GSCC”)을 만들었습니다. GSCC 는 인그리디언 윤리 강령을 지원하는 강령입니다. 본 공급업체 윤리 강령은 세계 인권 선언,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원칙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ETI(Ethical Trading Initiative, 윤리적인 무역 이니셔티브)가 규정한 원칙 및 인그리디언의 윤리 강령을 기반으로 합니다.

참고: 본 GSCC 에는 인그리디언의 모든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일반 요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공급업체 계약에는 이러한 동일한 문제를 다루는 보다 구체적인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GSCC 의 어떠한 내용도 특정 계약의 더 구체적인 조항을 대체하지 않으며, 본 GSCC 와 특정 계약의 다른 조항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다른 조항이 우선합니다.

II. 범위

인그리디언은 모든 직원이 법률을 준수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윤리적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공급업체에 대해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급업체가 공급업체 선정 및 평가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인 본 GSCC 에 명시된 원칙을 준수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수준의 공급업체, 제조업체, 계약업체, 합작 투자 파트너, 대리인, 유통업체 및 컨설턴트(각각 “공급업체” 및 총칭하여 “공급업체들”)는 [인그리디언 윤리 강령](#) 및 본 GSCC 를 모두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공급업체의 모회사, 자회사, 대리인, 하청업체 및 계열사에도 적용되며, 이들의 정규직, 임시직 및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직원들이 GSCC 의 의도와 서한을 모두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공급업체의 책임입니다.

III. 요건

인그리디언은 모든 공급업체가 다음의 공급업체 원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원칙 1: 윤리적이고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수행: 모든 인그리디언 공급업체는 최고 수준의 윤리적 행동 및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부패방지법 준수:** 인그리디언을 대리하는 공급업체는 1977년 개정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및 영국 뇌물수수법(“UKBA”)을 포함하여 모든 해당 뇌물수수방지 및 부패방지 법률, 규정 및 정책(“글로벌 부패방지법”으로 통칭)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부적절한 사업상 이득을 얻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지급이나 인센티브를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제안, 약속,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사기, 뇌물 (급행료 포함), 리베이트, 자금 세탁, 횡령, 갈취 또는 기타 형태의 부패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이해상충의 회피:** 인그리디언의 직원들은 인그리디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일체의 공급업체와 재무적 또는 기타 방식으로 인그리디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직원의 의무와 상충하거나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와 인그리디언 간의 일체의 거래 과정에서 인그리디언 직원을 고용하거나 그 직원에게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업무 과정 이외의 우정은 불가피하고 용인될 수 있지만, 공급업체는 인그리디언 직원의 업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인적인 관계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이해상충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관계 또는 개인적 관계를 포함하여, 공급업체의 직원이 인그리디언 직원의 가족인 경우(혈연, 결혼, 가까운 친척 관계로 직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람, 예를 들어, 배우자, 파트너,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시부모/장인/장모), 인그리디언 직원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친구, 지인, 동료, 또는 직원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해상충을 나타낼 수 있는 인그리디언 직원과의 기타 다른 관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공정한 경쟁:** 공급업체는 입찰 담합, 가격 담합, 시장 할당 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기타 금지된 행위를 포함하여 경쟁업체와의 불법적인 협력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무역 및 제재 법률 준수:** 인그리디언은 공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관련 무역 및 제재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인그리디언을 위해 또는 인그리디언을 대신하여 일할 때, 공급업체는 제재 대상 당사자 또는 국가와 또는 무역 제재 금지로 인해 합법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를 이용하여 일체의 거래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 **호화로운 선물, 식사 및 접대를 피하십시오:** 인그리디언 직원은 공급업체로부터 적당한 수준 이상의 선물, 식사 및 접대를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일상적인 업무상 식사 및 명절에 선물 바구니와 같은 작은 감사 표시는 일반적으로 괜찮지만, 공급업체는 인그리디언 직원에게 여행, 잦은 식사, 값비싼 선물 또는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는 어떤 것도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금 또는 상품권과 같은 현금 등가물의 선물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인그리디언의 기밀 정보 보호:** 공급업체는 공급업체가 소유한 인그리디언의 지적 재산, 영업 비밀 또는 기타 독점 정보를 포함하여 인그리디언의 기밀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및 규정 준수 조치 실행:** 공급업체는 본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구현해야 하며, 여기에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기밀 보고 및 고충 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원칙 2: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제공: 공급업체는 직원들에게 다음을 포함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 음용수, 적절한 위생시설, 조명, 온도, 환기 및 여성의 건강에 적합한 시설. 시설은 구조적으로 온전하고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 **적절한 안전 교육 및 PPE:** 공급업체는 전기, 구조적 무결성, 기계류, 화학물질, 독소, 차량, 추락 위험 및 시설 배치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잠재적 안전 위험에 대해 적절하고 합당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공급업체 직원은 적절하고 잘 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PPE”)를 제공받아야 하며, 공급업체가 직원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공급업체는 안전 및 잠재적 위험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 자료를 모든 직원의 역할에 맞게 기본 언어로 배포해야 합니다.
- **보건 및 안전 수칙을 명확하게 표시:** 보건 및 안전 관련 수칙은 시설 내 또는 작업 현장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기본적인 응급 처치 이상의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일체의 사건을 문서화하고 조사하여 해당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원칙 3: 제품 품질 및 안전 요건 충족: 공급업체는 인그리디언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보증된 대로 수행하며, 의도한 용도에 맞는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인정되거나 계약상 합의된 품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제품 안전에 관한 일체의 우려사항을 즉시 인그리디언에 보고해야 합니다.

원칙 4: 존엄성과 존중으로 사람들을 대합니다: 공급업체는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ILO 기본협약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존엄성과 존중심을 가지고 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다음 요건의 준수를 포함합니다.

- **인권 존중:** 공급업체는 공급업체의 사업 운영의 맥락 내에서 생명권, 개인의 자유 및 개인 보안을 보장함으로써 직원을 존중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조약 및 국제 표준을 포함한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성, 청년, 원주민, 소수자, 장애인, 이주 노동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 등과 같이 취약하거나 소외될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강제 노동 금지:** 공급업체는 비자발적 노동, 강제 노동, 계약 노동, 담보 노동, 노예 노동, 또는 인신매매 노동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강제 노동을 사용하거나 촉진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의 직원은 폭력이나 협박 또는 채무 조작, 신분증 압류 또는 출입국 당국에의 고발 위협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일하도록 강요받지 말아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고용 조건으로 직원의 정부 발급 신분증, 여권 또는 취업 허가증을 압류해서는 안 됩니다.
- **채용 수수료 지급 금지:** 공급업체의 직원은 공급업체, 인력공급 업자/기관 또는 채용과 관련된 기타 제3자에게 수수료나 비용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수수료 및 비용의 예로는 법적 수수료, 여행비, 숙박비, 여권 및 비자 처리, 건강 검진, 국내 지원 서비스, 개인 보호 장비 및 교육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이동의 자유 존중:** 공급업체는 작업장이나 직원 거주지를 포함하여 근무 시간 동안 또는 근무 시간 외에 직원의 구속, 구금 또는 구류 등을 통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업체는 여권, 신분 증명 서류, 보석류, ATM 카드 또는 토지 증서를 포함한

일체의 직원 소유 문서 또는 물품을 압류하거나 압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 **강압, 협박 또는 위협 금지:** 공급업체, 인력공급 업자/기관 또는 기타 계열사는 직간접적으로 직원이 직무를 수락하거나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협박, 위협 또는 괴롭힘과 같은 강압적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직원은 자신의 고용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하며, 자신의 고용 상태, 직무, 보상 및 공급업체 또는 직원에 의한 고용 종료 프로세스와 관련된 모든 조건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공급업체, 인력공급 업자/기관 또는 기타 계열사는 직원에게 모국어로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모든 계약 요소는 고용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 계약 및 계약에 대한 기록은 인그리디언 또는 지명된 제3자가 검토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 **아동 노동 금지:** 공급업체는 그들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이나 유통에 미성년자 노동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아동”이라는 용어는 만 15세, 의무 교육을 위한 최소 연령 또는 해당 국가의 최소 고용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보다미만인연령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족 사업 또는 견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성년자는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단, 그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도덕적 안녕에 위협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보복 금지:** 공급업체는 인권 또는 환경권 옹호자, 또는 표현/결사/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또는 사업이나 운영에 대한 항의권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 위협, 협박, 물리적 또는 법적 공격 등 어떠한 형태의 보복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임금 및 근로시간법 준수:** 공급업체는 최대 근로시간, 연장 근로, 휴가, 휴가 기간, 육아휴직 및 공휴일에 관한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 또는 단체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정한 보상 제공:** 인그리디언은 공급업체가 최소한 법적으로 의무화된 복리후생, 초과 근무, 그리고 및 기타 보험료 지급 상황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모든 해당 임금 및 시간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것을 기대합니다. 임금은 관련 업계 표준 생활임금 보상과 유사한 비율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 **차별 금지 및 공정한 대우:** 인그리디언은 공급업체들이 직장 내 다양성, 포용성 및 동등한 기회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는 차별이 없는 직장을 장려하고 유지해야 하며, 직원들을 공정하고 존엄과 존중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성적, 심리적 또는 언어적 괴롭힘이나 학대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 **단결권:** 공급업체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 자유롭게 직원들이 결사, 조직 및 단체교섭을 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은 차별, 양갈음, 보복, 협박 또는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근무 조건 또는 관리 관행에 대해 경영진과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칙 5: 지속 가능성 및 환경 관리 지원: 공급업체는 천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 **지속 가능성 및 환경 규정 준수.** 공급업체는 환경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비즈니스 의사결정 프로세스의 환경적 영향은 천연자원 보존, 자원 절감, 재료 재활용 및 오염 통제를 위한 기회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제조되거나 제공되는 국가의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자원 최적화.** 공급업체는 에너지, 물 및 농업용 투입물의 사용을 줄이고/줄이거나 최적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며, 물 오염을 최소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및 매립지 사용을 포함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Ingredion은 공급업체들이 물, 폐수,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및 포장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목표와 행동 계획을 식별, 설정하도록 장려합니다.

IV. 정보 제공 요청 및 위법 행위 보고

- A. **정보 요청 협조:** 우리는 공급업체들이 정보, 인증 및/또는 감사 접근에 대한 합리적인 요청에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의 관행은 공급업체와 협력하여 개선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시정할 수 없거나 공급업체가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우 당사는 관계를 종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B. **잠재적 위법 행위 보고:** 인그리디언 직원 또는 인그리디언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불법적이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에 관여했다고 생각하는 공급업체는 인그리디언의 기업 윤리 라인 INGRethics.com을 사용하거나 AsktheCCO@Ingredion.com으로 인그리디언의 글로벌 규정준수 부서에 연락하여 인그리디언에 문제를 보고해야 합니다.

COM-SCC-KO-v202409